

協同研究開發 促進法과 기대효과

권혁용

격주간 산학연21 취재부장



나라의 과학기술력을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자구적인 노력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체, 대학, 연구소의 자구적인 노력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1994년 1월 5일 대학·기업·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 사이의 협동연구개발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같은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제정배경

산학연의 협동연구개발의 필요성이 그동안 강조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협동연구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구호는 지난 30여년간 줄기차게 외쳐왔지만,

출연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들에게 타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로 인해 비교적 자유로웠던 연구개발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지배논리가 압도적인 분위기여서 시행할 엄두를 내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실례는 92년의 경우 선도기술 개발사업(G7프로젝트)은 총 148개의 세부과제 중 87.2%가 협동연구개발형태로 추진되었으나 기타의 특정연구개발 사업은 46.1%만이 협동연구개발이었다.

또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85%가 협동연구개발이었으나, 공업발전기금사업은 28.7%만이 협동연구개발이었다. 심지어는 기업간 협동연구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조차도 89년에 27.7%를 조합원사별로 단독 수행하는 설정일 정도로 협동연구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도 협동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는 소홀하였으며, 일부의 제도가 마련된 경우에도 연구개발비의 지원

과정에서 협동연구개발비의 지원 과정에서 협동연구개발 우선 시책이 필수요소로 채택되지 아니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제도 그 자체도 운영되기 어렵도록 만들어진 사례도 간과할 수 없는 데, 국·공립대학교의 교수나 국·공립연구소의 연구원이 기업연구소에 파견 또는 겸직될 수 없도록 제한 함으로써 협동연구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력의 흐름을 차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학연산협동 석·박사과정」의 운영을 활성화 하는 동시에, 93년도에는 「협동연구회」의 결성 지원, 공과대학 교수의 산업현장 파견제도를 창설하는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협동연구 분위기가 과학기술계에 체계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법률을 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제정경위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은 93년 12월 16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94년 1월 5일 법률 제4710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같은해 4월 1일 시행된 이후 12월 22일 법률 제4824호에 의거 공업 및 에너지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정되기도 했다.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연구개발행정에서 쌓여진 경험과 다수의 연구보고서·견의서를 토대로 내용의 합리성을 추구했으며, 산학연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과정의 소수성」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기도 했다.

법률안 작성의 주요 기초자료에는 과

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의 「산학연협동 연구촉진을 위한 방안수립연구(87.5)」, 서울공대의 「공학교육은 발전하고 있는 가(91.3)」,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건의서(91.3)」 및 「산학연 협동을 위한 정부의 역할(92.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술발전을 위한 산학연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92.10)」 및 「산학연협동연구강화 방안(93.7)」, 그리고 산업기술진흥협회의 「산업기술협동연구의 실적 및 계획조사(93.5)」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93년 4월 29일부터 5월 21일까지의 입법예고는 물론, 그에 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18개 정부출연연구기관, 30개 우수연구센터, 산업기술진흥협회, 23개 정부투자기관, 15개 관계부처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기도 했다.

기본구조와 체계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는 협동연구개발을 「대학·기업 또는 연구소가 다른 대학·기업·연구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의 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요원, 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형태」로 정의하기도 했다.

적용범위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과학기술의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기업화연구 및 시장화연구」로 제한하였으며, 정부등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는 협동연구개발을 「대학 기업 또는 연구소가 다른 대학 기업 연구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의 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요원, 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형태로 정의하기도 했다.

연구개발활동에 민자자율의 원칙을 최대한 살리기도 했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은 6대 핵심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정책의지의 표현」으로서 국가의 연구개발 지원방식을 산학연 협동 연구개발 체제로 전환·확립하고자 한 것이며, 둘째로 「우선 지원의 원칙」으로서 협동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과제선정과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는 「핵심요소의 공동이용」으로서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시설 및 연구개발정보의 공동부담·공동활용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네번째로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극대화」로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기업이전과 실용화를 촉진하고 있다. 다섯번째로는 「동기유발요소」로서 기업·대학·연구소가 기관 및 연구자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실효성 확보 조치」로서 단위기관별로 94년 6월 말까지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수정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의 시행일자는 94년 4월 1일로 정해지기도 했다.

기대효과

우리나라 연구개발 활동이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과학기술자들의 의식과 관행까지도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발효된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은 향후 몇가지의 기대점을 가지고 출발했다.

첫째,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제적

·기술적 위험부담을 분산·감소시켜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의욕이 고취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제한된 연구개발인력을 총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에 의해 대학원생의 연구수행능력이 신장되고, 그동안 사장되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연구개발시설·장비·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동일한 경과를 산출하는데 필요로 한 단위기관별 투입이 절약되어 경제성이 증대되고, 연구개발과제별로 우수한 두뇌들이 결집됨에 따라 연구개발내용의 충실화 및 성공 가능성의 향상, 그리고 개발기간의 단축효과를 거두어 세계적인 우수기술의 개발·획득 기회가 종전보다 크게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과학기술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의적 사고와 관행을 협력지향적으로 변화시키고, 이것이 과학기술계 외부로 확산되어 대화합의 국민정서 함양에도 기여해 날로 거세어 지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지난 94년 시행된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 내실을 기하고 우리의 과학기술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학연 각계의 노력이 절실하다.

아직 이 법이 시행된지 3년에 불과하기에 그동안의 성과를 논하기는 때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사회 전반에 걸쳐 협동연구에 의한 기술개발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앞으로 몇년 이내에 이법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연구개발 풍토는 산학연 협동을 통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